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기도 지역 돼지 반입(도축장 출하) 재개 알림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과 관련됩니다.
2. 우리 부는 경기 김포,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권역과 타 지역 간 돼지 반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그간 추가 발생이 없고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10.6일(목) 부터 다음과 같이 경기 권역내의 도축장으로의 출하를 위한 타 지역 돼지 반입을 방역관리 하에 허용함을 알려드리니, 전국 시·도 및 관계기관에서는 권역화 지역 이동 시 검사 등 방역관리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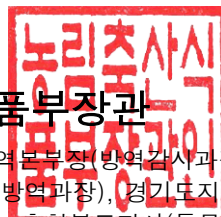
가. 대상 농장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완료 농장
- 2) 부출입구 폐쇄 등 시설 및 방역 기준에 대한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없는 농장
 - * 미흡사항 확인 시 개선 완료 이후 경기도 내 도축장 출하 가능
- 3)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농장
 - * (모돈) 전수검사(10두 미만 출하시 비육돈 포함 10두), (비육돈) 일관사육농장 : 모돈 5두 + 비육돈 5두, 비육전문농장 : 비육돈 10두 검사
 - ** 농장 내 폐사체, 위축돈 등 이상 개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 개체 및 그 동거축을 우선 채혈, 이후 출하이동 대상 개체 채혈

나. 도축장 및 차량 관리 : 세부사항은 기 시행 문서(구제역방역과-4567('22.7.7)호) 참조

- 1) (도축장 관리) 도축장 진입 전 임상검사, 강원도 소재 농장 돼지 작업 구분, 작업 후 차량 이동 및 소독 등 방역관리 철저
- 2) (차량 관리) 돼지운반차량은 농장 진입 전후와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진입 전후로 차량 내외부, 하부 등 철저히 세척·소독 실시
- 3) (환경검사) 계류장 및 차량 진입로 등 도축장 환경검사 실시(주 1회).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방역정책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수의사회, 농협경제제주 대표이사,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대한한돈협회

주무관 김형욱 서기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 유재형 전결 2022. 10. 5.

협조자

시행 구제역방역과-6489 (2022. 10. 5.)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38 팩스번호 044-868-0628 / skao7@korea.kr / 대한민국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